

붙임 1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관리규약 제101조제4항 관련)

평가위원 : (서명)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비 고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업무 수행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 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교 >

1. 입찰 참가업체가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그 외에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다음 40%는 3순위,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 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하고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점수 = 30 - {30 × (가중치) × [(입찰가 - 최저가) ÷ 최저가]}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본 공사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할 가중치(1~5)는 입찰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서 개봉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사전 결정하며, 결정된 가중치는 모든 유효한 입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